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1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1999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99.2.8)·시행령('98.12.31)·동법 시행규칙이 개정('99.2.22)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대상사업장이 확대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아울러 법·령·규칙 등에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동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치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시장에게 보고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 보고 및 검사 등의 관련 규정 삭제(안 제6조)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동 조례시행규칙으로부터의 이설 및 부과기준 조정, 2개 부과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제7조 관련 별표1)
 - 관련서식의 조례시행규칙으로부터의 이설(안 제7조, 제9조, 제10조)
 - 조례시행규칙의 폐지(안 부칙②)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유제한)

'99. 2.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부규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례도 상위법에 동일내용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을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 가.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2항은 법률 제7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기본계획 규정이 있어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 나. 제6조(보고 및 검사 등)는 법률 제34조(보고 및 검사)에 그 내용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 다. 제6조의 2(과태료 부과기준)는 신설조항으로서 법 제15조제5항과 동법 제16조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자원재활용 촉진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과 같이 정한다는 것은 별표1은 현행 조례규칙 별표2의 내용으로 그 일부를 개정하고 규칙을 폐지하여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할 사항을 조례에 모두 묶어 버린다고 하는 사항은 잘못 된 것으로 사료되며,

라.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항 중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고자 할 때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를 삭제하고 이하 내용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삽입키로 하는 것은 법률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조례 제7조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며 같은조 제2항, 제3항과 제9조제1항, 제2항, 제10조에 별지 서식을 삽입하는 것으로 구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사료되며 규칙에는 조례에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정비 및 개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상위법에 같은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삭제하고 강제성이 있다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
----------	----

제출년월일 : 1999. 7. 1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99.2.8)·시행령('98.12.31)·동법시행규칙이 개정('99.2.22)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대상사업장이 확대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동 조례시행규칙에서 보완 이설), 아울러 법·령·규칙 등에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동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치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시장에게 보고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 나. 보고 및 검사 등의 관련규정 삭제(안 제6조)
-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동 조례시행규칙으로부터의 이설 및 부과기준 조정, 2개 부과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제7조 관련 별표1)
- 라. 관련서식의 조례시행규칙으로부터의 이설(안 제7조 제9조 제10조)
- 마. 조례시행규칙의 폐지(안 부칙②)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②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의2(과태료·부과기준) 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중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후”를 삭제하고 “그 상대방에게”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의”를 추가한다. 동조 제2항중 “납부기간을 정하여”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추가하고 동조 제3항중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의”를 추가한다.

제9조제1항중 “30일 이내에”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에 의하여”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중 “구청장은 지체없이” 다음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를 추가한다.

제10조중 “과태료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 “별지 제6호의 서식의”를 추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시행규칙(규칙 제209호)은 폐지한다.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 제외)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1)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의 식품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2,000	3,000	3,000	
(2)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3,000	3,000	3,000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3,000	3,000	3,000	
마.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3,000	3,000	3,000	
마의2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의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2,000	3,000	3,000	
마의3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2,000	3,000	3,000	
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	3,000	3,000	3,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3,000	3,000	3,000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2,000	3,000	3,000	
2.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각층 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또는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가 당행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⑤위반사항				
⑥과태료금액		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 (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부 과 기 준		⑥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받은일자		⑦과태료 금액	
	⑧과 태 료 처 분 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 영등포구청장 (인)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금액	
	⑥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 번호	②통지서 번호	③과태료 처분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 제기일	⑫법원 통보일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생략) ②구청장은 시조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 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삭 제)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삭 제)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삭 제)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 ②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6조(삭 제)	제6조(삭 제)	제6조(삭 제)
제6조의 2(과태료 부과기준)	신 설	제6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6조의2) 관련 과태료부과기준의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천원>

현행(동조례시행규칙별표2)				개 정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가. <u>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썬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u>	1,000	2,000	3,000		1.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가. <u>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전분으로 만든 이썬시개 제외)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u> (1) <u>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u> (2) <u>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u>	2,000	3,000	3,000	
나. <u>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썬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u>	1,500	2,500	3,000						
나의2 <u>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썬시개는 사용자제</u>	300	500	1,000		나의2 삭제				

<단위 : 천원>

현행(등 조례 시행규칙 별표2)				개정					
부과대상	부과기준			비고	부과대상	부과기준			비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다. <u>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무상제공 억제</u>					다. <u>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u>	3,000	3,000	3,000	
(1)일반목욕장업(공동탕·가족탕·한증막)	1,000	2,000	3,000						
(2)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터키탕·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라. <u>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증 객실 7실 이상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u>									
(1)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	1,500	2,500	3,000						
(2)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마. <u>도·소매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u>	1,500	2,500	3,000		마. <u>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u>	3,000	3,000	3,000	
<신설>					마의2 <u>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의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u>	2,000	3,000	3,000	
<신설>					마의3 <u>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u>	2,000	3,000	3,000	
바. <u>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u>	2,000	2,500	3,000		바. <u>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u>	3,000	3,000	3,000	
사. <u>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u>	1,500	2,500	3,000		사. <u>식품위생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u>	3,000	3,000	3,000	

<단위 : 천원>

헌행(등 조례 시행규칙 별표2)				개 정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1,000	2,000	3,000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2,000	3,000	3,000	
2.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가. (생략)	300	500	1,0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또는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주) (생략)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관련법규대비표

조 례	관 련 법 규	폐 지 사 유
<p>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p> <p>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p> <p>②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p>	<p>법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사업소 또는 작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2.8)</p> <p>6. 법 제15조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p> <p>7. 폐기물 배출자(개정 '99.2.8)</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있음.</p>
<p>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의</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관련법규대비표

조 례 시 행 규 칙	관 련 법 규	폐 지 사유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질 등의기준에관한규칙·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①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p>	<p>법 제15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 ④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자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개정 '98.2.8></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2.8></p> <p>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 제12조(음식점 등의 규모와 실천사항) ①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목욕장·백화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있음.</p>

조 례 시 행 규 칙	관 련 법 규	폐 지 사유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2.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숙박업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 <p>③제1항의 “법상 의무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개정 '98.12.31) 2.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개정 '98.12.31) <p>②법 제15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2.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개정 '98.12.31)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개정 '98.12.31)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종합소매업(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 <p>③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조 례 시 행 규 칙	관 련 법 규	폐 지 사 유
<p>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p> <p>2. 1회용품의 사용자제</p> <p>3. 1회용품의 무상제공 억제</p> <p>4.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도·소매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운영</p> <p>5.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신설 '95.4.12)</p> <p>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원 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3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①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이하 "일반폐기물 배출자"라 한다)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별표 1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접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p>	<p>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p> <p>2. 1회용품의 사용자제</p> <p>3. 1회용품의 무상제공 억제</p> <p>4.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운영</p> <p>5.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p> <p>시행령 제13조(제조사 등에 대한 조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법 제16조(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①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5조(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지정폐기물 배출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있음.</p>

조 례 시 행 규 칙	관 련 법 규	폐 지 사 유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p> <p>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p> <p>③구청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①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시행령 제14조(폐기물 배출자의 범위)</p> <p>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p> <p>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p> <p>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p> <p>법 제16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시행규칙 제5조(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2.22)</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있음.</p>

조 례 시 행 규 칙	관 련 법 규	폐 지 사 유
<p>②사업자 등은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완료 신고서에 의한 이행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또는 조리판매업소에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일반폐기물은 당해 사업자가 탈수·미생물에 의한 감량화처리·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 감량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로서 1일평균 연급식 인원이 2천 이상인 집단급식소</p> <p>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자로서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p>	<p>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13조(제조사 등에 대한 조치 내용 등) ③제조사 등 또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규칙 제4조(이행기간 연장신청 등) ②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완료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p> <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생략 - 별지참조)</p>	<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에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있음.</p>

조례시행규칙	관련법규	폐지사유
<p>제6조(벌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한다.</p>	<p>생략</p>	
<p>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생략</p>	
<p>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 안 제6조의2)에 신설</p>	<p>조례에 이설</p>
<p>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수납부등) ①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한다. ②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납부독촉장(별지 제5호 서식)을 발부한다. ③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한다.</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 안 제7조 제10조)에 이설</p>	<p>조례에 이설</p>

조례시행규칙	관련법규	폐지사유
<p>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고 관할법원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를 통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조 또는 조리판매업소 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3천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는 1994년 9월 1일부터 그 외의 업소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 대하여 1995. 8. 1부터 적용한다.</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 제9조)에 같은 규정을 이설</p>	<p>조례에 이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범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99. . .)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삭제 '99. . .)

제6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신설 '99. .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진술) 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삭제 '98.12.31)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규칙 제209호)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한다.